

1. 개정이유

「검찰청법」 폐지(법률 제21490호, 2026. 3. 24. 공포, 2026. 10. 2. 시행) 및 「공소청법」 제정(법률 제21490호, 2026. 3. 24. 공포, 2026. 10. 2. 시행)으로 '26. 10. 2.부터 '검찰청'이 폐지되고 '공소청'이 설치·운영됨에 따라, '검찰청' 명칭을 '공소청'으로 변경하는 등 기관 명칭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관련 기관 명칭 정비(안 제7조, 제9조, 제10조 및 제12조)

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의 보관 기관, 환부 여부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및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구성·운영 등 관리 주체로 규정되어 있던 '검찰청' 및 '검찰청의 장'을 각각 '공소청' 및 '공소청의 장'으로 변경

나.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관련 서식 정비(안 별지 제1호, 제4호, 제5호, 제8호, 제9호)

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관련 서식에 기재된 '검찰청' 명칭을 '공소청'으로 변경하는 등 개정 관계 법령에 따라 서식 정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

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일부개정령안
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9조 제2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10조 제5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의 기호(○) 중 “○검찰청”을 “○공소청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의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하며, 같은 서식 기호(○) 중 “○검찰청”을 “○공소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의 “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/지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기호(○) 중 “○검찰청”을 “○공소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의 기호(○) 중 “○검찰청”을 “○공소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8호서식의 기호(○) 중 “○검찰청”을 “○공소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9호서식의 기호(○) 중 “○검찰청 검사장”을 “○지방공소청장/○○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○○공소청 ○○지청

(전화번호)

수신

제 목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 통지

아래와 같이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위해 회복대상재산을 보관 중이므로 "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"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번호	년 제 호
---------------	-------

-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공소청:
- 회복대상재산의 명세 및 가액
 - 금전 외 재산(환가여부:): (가액: 원)
 - 금전: 원
- 몰수재판 또는 추정재판을 한 법원 등
 - 선고법원:
 - 재판 연월일 및 확정일:
 - 법원 사건번호:
 - 피고인 성명:
 - 몰수 또는 추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의 요지 및 죄명 :
- 청구기간: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

○○공소청 ○○지청

검사 (인)

유의사항

-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복대상재산을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.
- 청구인이 범죄피해재산을 반환받았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해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는 반환받거나 배상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.

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서

부장검사	차장검사	지방공소청장/ 지청장

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번호		년 제 호	
청구일자		결정일자	
청구인	성명(명칭)		
	생년월일(등록번호)		
	대리인	성명	
		생년월일	

○ 결정 주문

- [] 청구를 인용(認容)하여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다.
[] 청구를 기각한다.
[]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의 일부를 환부하고, 청구의 일부를 기각한다.
[] 청구를 각하한다.

○ 피해인정재산

- 환부청구재산 및 그 가액:
-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:

○ 결정 이유 (상세한 이유 별지로 작성)

- 추가 공제대상금액 확인
(예시 : . . . 에 지급받은 금_____원 확인)

○○공소청 ○○지청

검사 (인)

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통지서

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번호		년		제		호	
결정일자		년		월		일	
청구인	성명(명칭)						
	생년월일(등록번호)						
	대리인	성명					
		생년월일					

년 월 일 귀하의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
결정 주문	[] 청구를 인용(認容)하여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다. [] 청구를 기각한다. []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의 일부를 환부하고, 청구의 일부를 기각한다. [] 청구를 각하한다. 환부청구재산 및 그 가액: 원 /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: 원
결정 이유	[] 청구 사항에 대한 소명 부족 [] 추가 공제대상금액 확인 (예시 : . . . 에 지급받은 금_____원 확인) [] 기타 사유()

- 위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회복대상재산상에서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환부하므로, 위 결정금액과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청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청구인의 피해인정재산 가액에 비례해 환부하므로, 위 결정금액과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○○공소청 ○○지청

검사 (인)

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

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번호		년		제		호	
신청일자				결정일자			
신청인	성명(명칭)						
	생년월일						
	(등록번호)						
	대리인	성명					
		생년월일					

이의신청 내용	
------------	--

결정 주문	[]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다.
	[] 이의신청을 기각한다.
	[] 이의신청의 일부를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의 일부를 환부하고, 일부는 기각한다.
	[] 이의신청을 각하한다.
	환부청구재산 및 그 가액 : 원 /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 : 원

결정 이유	(상세한 이유 별지 기재)
-------	----------------

○○공소청 ○○지청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

위원장	(서명 또는 인)
위원	(서명 또는 인)
위원	(서명 또는 인)
위원	(서명 또는 인)
위원	(서명 또는 인)

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

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번호		년		제		호	
결정일자							
신청인	성명(명칭)						
	생년월일 (등록번호)						
	대리인	성명					
		생년월일					
년 월 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.							
결정 주문	[]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다. [] 이의신청을 기각한다. [] 이의신청의 일부를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의 일부를 환부하고, 일부는 기각한다. [] 이의신청을 각하한다.						
	환부청구재산 및 그 가액 : 원 /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 : 원						
결정 이유							

○○지방공소청장/○○지방공소청 ○○지청장 직인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 작성)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담당하는 검사는 청구인에게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를 작성하여 소속 검찰청에 보관해야 한다.	제7조(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 작성) ----- ----- ----- ----- 공소청 -----.
제9조(이의신청에 대한 결정) ① (생략) ② 검찰청의 장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.	제9조(이의신청에 대한 결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공소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0조(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운영) ① ~ ④ (생략)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검찰청의 장이 정한다.	제10조(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운영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공 소청-----.
제12조(위원의 해촉) 각 검찰청의 장은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	제12조(위원의 해촉) -- 공소청 -- ----- -----
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觸)할 수 있다. 1. ~ 5. (생 략)	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
--	--